

自由貿易協定과 金融産業의 法的 課題

成 熙 活 *

차 례

- I. 머리말
- II.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법적 과제
 -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 2. 보완 과제
- III. 국경간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 2. 보완과제
- IV.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에 관한 법적 과제
 -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 2. 보완과제
- V. 감독기관의 국제공조에 관한 법적 과제
 -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 2. 보완 과제
- VI. 외국자본의 거래소 지분 취득에 관한 법적 과제
 -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 2. 보완과제
- VII. 맺음말

【참고문헌】

* 韓國證券先物去來所 法務팀장, 법학박사·뉴욕주변호사.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5건 체결하였다.¹⁾ 이 중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다룬 것으로는 한·싱가폴, 한·EFTA 및 금년 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있다. 그런데 한·싱가폴, 한·EFTA FTA는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주제들 중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규제투명성, 분쟁해결 등 일반적인 무역협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금융서비스·국경간 거래·금융정보의 국외이송 등 민감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어서 특별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이번 한미 FTA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²⁾ 더욱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금융강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미 FTA가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며 향후 다른 FTA 추진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에서 금융산업은 그다지 큰 이슈가 제기되지 않아 협상타결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정부가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어느 산업분야 보다 더 개방 폭이 큰 업종 중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번 FTA 타결로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오거나 그에 따라 대폭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금융 강국인 미국과의 협정이란 점에서 금융업계의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우리 금융산업의 취약한 점을 공략

1) 협정 체결 상대방은 칠레(2004.4.1 발효), 싱가포르(2006.3.2 발효), EFTA(2006.9.1 발효), ASEAN(상품 2007.6.1 발효), 그리고 미국(2007.4.2 타결)이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사이트 <http://www.fta.go.kr/user/index.asp> 참조.

2) 김상조,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 방안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4, 23면 참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다행히 최종 타결된 내용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만큼 큰 폭의 개방은 아니어서 이 기회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중 금융서비스 분야의 법적 과제를 고찰하고자 작성되었으나 FTA에 대한 일반론적인 접근으로는 제한된 지면에서 의미 있는 검토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포괄적 금융서비스 협정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에 집중하여 법적인 과제를 고찰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추가 FTA와 금융국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중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구체적 추진방안 내지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추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서술하고자 한다. 더욱이 향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보다 개방폭이 확대되는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거 추가 개방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허용되므로 현 단계에서 한미 FTA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밀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논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거나 FTA의 성공적 집행에 기본요건이 되는 주제들, 즉 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 감독기관의 국제공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업공개 및 상장(IPO)’을 즈음하여 외국자본의 거래소 지분 취득 문제가 시의성이 있다고 보아 특별히 논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분쟁해결의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 특집에서 다른 논문이 독립적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여기서는 생략하고 또 다른 핵심 주제인 규제 투명성은 검토 사항이 많지 않아 여기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한미 FTA 협정문³⁾ 제13.11조(투명성)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규제·감독의 투명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동조는 감독행정의 불투명성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항에서는 규정 제정시 이해관계자와 당사국의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고, 제5항은 자율규제기관의 운영규칙도 신속하게 공표되고 이해관계자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6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과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8항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상황을 알려주도록 하고 제9항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등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제10항에서는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거부사유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한미 FTA 이전부터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왔고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문 부속서에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추진해 온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감독당국은 향후에도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서 금융기관 인·허가 신청시 120일 이내(보험은 150일)에 결정하고,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의견수렴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행정지도 시에도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의견수렴절차도 준수할 방침이다. 따라서 한미 FTA 관련 법적 과제로서 핵심적인 요소인 규제 투명성 제고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많지 않다.⁴⁾ 다만 정부의 유권해석 사례가 미국에 비해 공개되는 범위가

3) 협정문은 정부가 공표한 한미 FTA 원문 중 한글본을 기준으로 한다.

4)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투명성 제고조치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좁아 보이는데 그 동안의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면 금융실무가들의 업무 수행과 준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⁵⁾ 또한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업계의 질의와 금융감독당국의 답변은, 미국과 같이 서면질의와 공식적인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과 또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이나 제도 도입시 사전에 충분한 연구 및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종의 로드맵과 같은 정책제안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ncept release나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Consultation paper와 같은 것인데, SEC의 경우 주요 정책 추진시 통상 Concept release를 발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Final rule을 채택하고 있다.⁶⁾

II.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집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한미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금융서비스의 정의에 관하여 제13.30조(정의)는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내에서

금융감독제도관련 투명성 제고 등 규제개혁 추진, 2006.8.18과 동 기관,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2007.6.8. 및 동 기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2007.10.22 참조.

5) 재정경제부의 경우 현재 유권해석을 요청자가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만 공표하고 있어서 비공개 사례가 훨씬 많다.

6) 이 과정에서 rule proposal이 final rule 확정 전에 중간단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SEC는 공매도 규제 개편 과정에서, 1999.10에 Concept Release (Release No. 34-42037)를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한 후, 2003.10에 개정안(Release No. 34-48709)을 입법예고하고 2004.7에 최종안(Release No. 34-50103)을 확정 공표하였다. 한편, 심 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제2호, 2006, 66-67면은 consultation paper와 policy statement를 위주로 하는 영국의 규정 제·개정 절차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3.6조(신금융서비스)는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각주 2는 “제13.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3.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감독당국의 설명과 대응방침을 보면,⁷⁾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즉 ①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것, ②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것, ③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것(즉, 지점 또는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④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정부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5.25.

2. 보완 과제

신금융서비스는 금융강국인 미국이 크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핵심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는데 막상 협상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고 쉽게 타결되었다. 이는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이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 조건들이 사실상 우리 측 입장에 부합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⁸⁾

문제는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쪽의 대응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신금융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⁹⁾은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무한한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증권은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¹⁰⁾을 수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되었고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날씨, 범죄율, 재해율 등 각종 환경·사회·경제 지표 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포괄주의 하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미국계 금융기관이 향후 적극적으로 다양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나서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¹¹⁾

8) 이 조건들은 ①현지법인 및 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②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검증한 금융상품만 가능하고 한국 현행 금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등의 조건아래 개방, ③한국 금융감독당국이 허가제로 운용 가능 등이다. 최희갑, “한미 FTA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증권예탁」 제59호, 증권예탁결제원, 2006, 56면 참조.

9)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현행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6개 법률을 통합한 법이다. 2007.8.3 제정된 동법은 1년 6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10) investment contract은 미국 증권법의 핵심개념으로 증권의 형식이나 이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대상이 증권에 해당되어 증권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우리 자통법에는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자통법 제4조제6항).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하여 최대한 국내 금융기관을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허가(인가)제 하에서도 허가(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건전성 사유에 국한되고, 또한 허가(인가) 여부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협정문에 명문화 하고 있어 우리 감독당국의 재량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기로 결정된 신금융서비스만 미국 금융기관에 허용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하여, 이를 현행 국내법상 허용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기관에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협정문의 문리적 해석상 용인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상품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의 하나로 미국 금융기관의 신상품 인가에 대한 조건으로 국내금융기관과의 제휴·지원 등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그동안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벽중 특히 외국계가 정통한 신상품 및 신금융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이 승인절차의 복잡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당국의 허가(인가)재량이 상당부분 축소됨에 따라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 사실 신금융서비스의 확대는 금융의 국제화와 FTA의 기본 정신을 고려할 때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신금융서비스의 긍정적인 면, 즉 소비자의 후생과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를 고려하면 우리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역

11)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많은 우려는 이러한 금융상품 내지 증권 개념의 포괄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즉 우리법상 금융상품 내지 증권 개념의 열거주의로 인해 우리 금융기관이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신금융서비스가 FTA에 따라 국내에 제공됨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동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 금융브리프」 제15권 10호, 2006.3 및 김상조, 전계 논문, 28면 참조.

12) 최희갑, 전계 논문, 54면, “<표II-13>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 무역장벽보고서(한국편)” 중 참조.

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통합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의 지속적인 개선과 자통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용방식을 인가제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자는 주장은¹³⁾ 우리 금융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국경간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국경간 거래에 대한 한미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 (국경간 무역)

-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13) 상계, 86면.

제13.20조 (정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
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
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해상운송, 상업적 항공, 우주 발사 및
화물,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험/ 재
보험 및 재재보험/ 컨설팅·위험평가·계리·손해사정 서비스 등 보
험 부수 서비스/ 보험 중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중개를 제외한 자문 등 부
수 서비스. 다만,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금융거래를 위
한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설명과 대응방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경간
거래의 허용범위를 제한하여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
은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2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
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보완과제

협정 내용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우선 국경간 거래의 허용 범위와 관련한 것이다. 통상 금융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에 따르면 국경간 서비스 거래는 ①국경간 공급(Mode 1) ②해외소비(Mode 2) ③상업적 주재(Mode 3) ④자연인의 주재(Mode 4)로 분류되어 각각 규정될 수 있다.¹⁴⁾ 국경간 공급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해외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¹⁵⁾

그런데 앞으로 국경간 거래의 주된 형태가 될 인터넷 거래에서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가 과거처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¹⁶⁾ 이번 협정문상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굳이 구분

1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393-396면. 각 Mode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일국의 영역에서 타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의 공급(예: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 ②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or movement of customers):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예: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등)
- ③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일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 등을 통해 타국의 영토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이동을 수반(예: 은행지점, 대학분교 등)
- ④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함을 의미(예: 자회사 임원, 회계사 등).

15) 최희갑, 전계 논문, 각주 38) 참조.

16) 이호진, “금융시장 개방 쟁점과 파급효과”, [한미FTA, 전문가에게 듣는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2006.8.22.

<http://fta.korea.kr/Article/?dataSeqNo=4233&dataGubun=Column&PageMode=Detail> 참조. 최희갑, 전계 논문, 44면 또한 “금융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이므로 국경간 서비스 제공에 관해 지리적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다. 전자상거래가 점차 중요도를 더해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지리적 위치에 관한 모호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하자면 영업활동 내지 구매권유가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된다. 즉 제 13.5조제1항은 영업 내지 구매권유가 허용되는 국경간 공급으로 볼 수 있고 제2항은 이러한 권유활동 없는 해외소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1항의 국경간 공급은 부속서에 열거된 서비스만이 가능하나 제2항의 해외소비는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에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영업 내지 구매권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더욱이 보편적인 국제어라 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미국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상의 표시행위를 구매 권유로 보기도 어려워 사실상 해외소비 형태를 띤 국경간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¹⁷⁾ 이럴 경우 이번 협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국경간 거래 범위 밖의 다양한 금융거래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여지도 있다.¹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¹⁹⁾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법이 어느 나라의 것이냐 하는 점이다. 협정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이 다만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뿐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²⁰⁾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방

17) Aaditya Mattoo & Sacha Wunsch, "Preempting Protectionism in Services: The GATS and Outsourcing", January 2004는 GATS가 전자적 서비스 거래의 범주에 대하여 국경간 공급으로 할 것인지 해외소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만족할 만한 의견일 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www.iie.com/publications/papers/wunsch0204.pdf 12면 참조.

18) 심 영, 전계 논문, 69면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작성하고, 인터넷 주소를 한국에서 부여받은 경우는 국경간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경간 공급 규제를 위하여 미국의 국경간 공급자로 하여금 상품의 내용, 금융기관의 명칭, 금융서비스영업의 허가내용, 분쟁해결의 방법과 절차 등을 우리 감독당국에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 Aaditya Mattoo & Sacha Wunsch, 전계 논문, 각주 30)에서도 이러한 분류의 모호 함은 금융 등 규제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관할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 최승필, "경제행정의 수단으로서의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1, 각주 58)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선택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식은 ①이용국의 규제·감독 적용, ②제공국의 규제·감독 적용, 그리고 ③이용국과 제공국의 규제·감독의 혼합 적용 방식이 있을 수 있다.²¹⁾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주요국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방식>²²⁾

업 종	이용국 규제·감독 적용	제공국 규제·감독 적용
은 행	영국(예금),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대출)
증 권	핀란드, 호주,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보 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지정국)

이용국 규제는 자국민 보호에 효과적이고 당국의 규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업적 주재가 없기 때문에 제공국의 감독당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집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상 국경간 공급자에게 등록이나 면허 등을 통하여 규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국 감독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²³⁾ 다만 이 경우 제공국의 금융기관은 이중규제의 부담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경간 공급이 위축될 여지가 많다. 또한 제재조치의 집행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공국 규제의 경우 국경간 공급자는 제공국 감독당국의 배타적 감독을 받게 되고 이용국 감독당국은 제공국 감독당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 규제 방식은 제공국의 감독당국이 높은 집행능력을 가

21) 최희갑, 전계 논문, 45면 참조.

22) 상계, 46면.

23) 상계, 45면.

지고 이용국 감독당국과의 협조 관계도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국민 보호에는 어느 정도 취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용국과 제공국 규제의 혼합 적용은 자국민 보호 필요성과 요구되는 금융 소비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분야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이다.²⁴⁾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분야(예를 들면 영국과 같이 대출 보다는 예금)나 금융 소비자의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미국과 같이 은행 보다는 증권)에서 이용국 규제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공국 규제가 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OECD 방식은 일반적으로 제공국 규제이나, 다만 소비자 보호(가입권유와 광고)에 있어서는 이용국 규제이고, 보험의 경우 제공국 규제가 일반적이고,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높은 금융지식 요구로 보호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이용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²⁵⁾

향후 한미 FTA의 구체적 집행 과정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 적용은 국경간 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적 입장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경간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이용국 규제를 적용하고, 국경간 거래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고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높은 금융지식이 필요 없어 보호에 큰 문제가 없는 분야부터(예를 들어 은행수산업무 등) 제공국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²⁶⁾ 그 이행과정에서 금융 분

24) 상계, 47면은 혼합 적용을 위한 판단요인으로 “금융서비스의 유형(신용의 제공 또는 예금의 유치),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금융지식수준,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제공국 소재 여부, 이용국에서의 활동 정도 등”을 들고 있다.

25) 상계, 48-50면 참조.

26) 정경영, “한미 FTA가 자본시장 법제에 미치는 영향”, 「증권예탁」 제59호 2006-3 분기, 증권예탁결제원, 2006, 188면도 같은 의견. 반면에 송홍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 거래와 투자자보호”, 「금융리스크리뷰」, 제3권제2호, 2006 여름, 169면은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국가의 감독규범을 따르면서 장기

야별로 이용국 규제와 제공국 규제를 적절히 혼합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용국 규제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문상 허용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등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⁷⁾

IV.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집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에 대한 한미 FTA 협정 내용을 보면, 우선 <부속서 13-가> 제6항의 경우 “제13.5조제1항(국경간 무역)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부속서 13-나> 제2절(정보의 이전)에서는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을 발효한다”고 하고 있다. 이어 <부속서 13-나> 제3절(기능의 수행) 제1항에서는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나. 데이터처리 (각주 16: 당사국이 부속서 13-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

적으로 양자의 감독규범의 조화 내지 수렴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27) 국경간 거래에 대한 대부분 검토의견이 미국 금융기관의 공세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방어적인 입장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송홍선, 진계 논문은 국경간 거래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외국에 국경간 공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와 투자자보호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체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다음과 같은 감독체계를 구축한 후 2년 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①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 금지, ②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접근과 ③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을 유지토록 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2. 보완과제

개인의 금융 및 기타 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데, 이제 해외에서까지 개인의 정보가 유통된다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보의 국외이송 허용을 2년 유예한 것은 다행이며 이 유예기간 중 우리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은 정보의 국외 이송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자국보다 보호가 취약한 국가로의 이송에 대해서는 자국 수준의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고 한다.²⁸⁾ 미국과의 금융정보 공유 협상 시에도 EU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미국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국 EU 회원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국민과는 달리 좀 더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세이프 하버 약정(Safe-harbor-

28) 임규철,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6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1, 164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지침은 “EU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이다.

Arrangement 또는 Safe-harbor-principles)”을 도출하였다.²⁹⁾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도 최근에는 관련법제 등을 개선하여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송은 엄격한 요건 충족이 이루어진 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³⁰⁾ 따라서 한미 FTA를 넘어 EU 등과의 FTA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외국의 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우리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는 그 보호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단순히 수평비교하기 어려우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과 문화적 측면도 크게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판결문이나 규제기관의 조사보고서 같은 공적 문서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넓은 국토와 다양한 인종의 구성으로 설령 개인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National ID, 즉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가 단일의 개인 식별번호가 없다는 점이다. 주민번호 하나로 금융, 부동산, 신용거래 등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소상히 파악되고 추적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양국의 개인정보 문화가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련 법제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장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의 국외이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과제를 간단히 제기하기로 한다. 우선 국외 이전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29) 임규철, 상계 논문, 167면. 이 세이프 하버 약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백윤철,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토지공법연구」 제1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6 참조.

30) 임규철, 전계 논문, 165면. 반면에 자국 외의 외국 국민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국제적인 보호 원칙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자국법의 보호범위 내에서만 보호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계.

지적하고 싶다. 협정문 <부속서 13-가> 제6항은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의 범위가 모호하고, 더욱이 이 조항은 국경간 거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의 국외 이전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13-나> 제2절과 제3절은 금융정보라는 용어 대신에 금융기관이 데이터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저 ‘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금융정보, 즉 수신에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와 여신에 관련된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기타 일반적인 개인정보까지 포괄될 여지가 많다.

이 문제는 개인금융정보에 관한 국내법상의 문제와 맞물려 광범위한 정보의 유출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정보의 규제법제를 보면 금융기관의 수신업무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일차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규제대상이고,³¹⁾ 여신업무 관련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규제대상³²⁾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³³⁾ 그런데 신용정보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여 웬만한 개인정보는 거의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는 신용정보를 정의하기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는 개인식별정

31)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3)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제25권제2호. 상사법학회, 2006, 89면에 따르면 금융업 실무에서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정 변호사 본인은 법문의 해석상 금융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하나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³⁴⁾ 신용거래정보,³⁵⁾ 신용도 정보,³⁶⁾ 신용거래능력 정보,³⁷⁾ 신용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³⁸⁾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인 신용정보”라는 개념으로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³⁹⁾

이와 같이 금융정보의 개념이 금융거래정보외에 신용정보까지 포괄한다고 본다면 그 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신용정보법이 될 것이고 동법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상정보의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협정문상의 국외이전 대상도 그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만 되어 있어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본다.

더욱이 신용정보법은 정보 주체의 보호에 못지않게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유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아웃소싱이 활발한 미국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적 정보가 이송된다면 사생활 노출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송에 대응하여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34)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35)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36)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37)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38)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와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이상 시행규칙 제2조제3항).

39) 신용정보법 제23조.

경우⁴⁰⁾ 금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때 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수집가능 범위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위탁처리되는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것인데, 감독당국은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협정문상의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라는 문구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감독당국이 해외수탁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그 것이 국제관행상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감독기관의 국제공조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집

한미 FTA 협정중 감독기관간 원활하고 긴밀한 국제공조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부속서 13-나> 제7절(감독 협력)에서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감독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양국이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하

40) 현행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은 국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전제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임규철, 전계 논문, 161면.

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FRB, SEC 등) 사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2. 보완 과제

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한미 FTA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이며 FTA 이외에도 국경간 불공정거래 규제 등 우리나라 금융국제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⁴¹⁾ 감독당국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보아 정보교환 및 감독·조사의 협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한데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MOU 등의 체결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여러 외국 감독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왔으나,⁴²⁾ 실질적인 규제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은 2006.3월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였다.⁴³⁾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 체결한 MOU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증권·상품감독청(SCA)과의 MOU(2007.5),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와의 MOU(2007.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TOR(2007.6)⁴⁴⁾ 등이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한데 증권과 보험분야에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이제 남은 분야는 은행권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이 있다.

41) 최희갑, 전계 논문, 87면 참조.

42) 금융감독당국은 2007.6.22. 현재 13개국 19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차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86호. 이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형식적인 우호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44) Terms of Reference란 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는 로드맵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서, 어느정도 완결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LOI(Letter of Intent)에 비해 다소 낮은 단계의 협력체제로 볼 수 있다.

한편 FTA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금융국제화를 위해서 긴요한 국제협약이 있는데 바로 증권규제 관련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⁴⁵⁾의 MMoU와 파생상품규제 관련 Boca Declaration이다. 이 두 협약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적 감독공조체제이다.

IOSCO는 2001년 미국 9.11 테러후 증권시장에서의 국제적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2.5월 회원 기관간의 다자간 MOU(Multilateral MoU: MMoU)⁴⁶⁾를 출범시키고 2005년에는 이 다자간 MOU를 증권감독기관간 국제협력의 벤치마크로 삼을 것과 2010.1월을 테드라인으로 정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7.5월 현재 46개 기관이 정식 서명(Appendix A) 하였고 15개 기관이 서명예비기관(Appendix B)에 등록되어 있다. IOSCO MMoU는 이제 국경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되고 있고 서명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준비로 서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⁴⁷⁾

그런데 이 MMoU의 서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MMoU는 협조요청과 관련된 혐의자 등에 대한 진술요구권 또는 선서에 의한 증언획득 권한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⁴⁸⁾ 우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는 외국 증권감독기관이 우리 거래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5) IOSCO는 국제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와 감독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1975년 설립된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2007.10월 현재 109개의 정회원(Ordinary member), 11개의 부회원(Associate member), 69개의 제휴회원(Affiliate member: 주로 거래소로 구성)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직이다.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

46) <http://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126.pdf> 참조.

47) 증권법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J. William Hicks 교수도 이 MMoU가 증권규제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적 정보공유 협정이며,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표준이라고 하고 있다. J. William Hicks, "Effective Securities Law Enforcement: Illegal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Fraudulent Disclosures involving Securities of Foreign Issuers", 「증권선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6.6, 22면.

48) IOSCO MMoU §7(b)(iii) 및 Questionnaire 2.

즉 MMoU에서 말하는 혐의자란 거의 대부분 협조요청국의 법을 위반한 자일 것인데, 현행 증권거래법상 우리나라 법을 위반함이 없이 외국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우리 감독당국의 진술요구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므로 MMoU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령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외국법 위반자에 대한 우리 감독당국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공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MMoU는 정보요청기관이 제공받은 비공개정보를 수사 및 형사소추, 기타 민사·행정적 제재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⁹⁾ 우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는 제2항에서 정보교환시 사전에 재경부장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공정보가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될 경우 금감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서 가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자국민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한 사안인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을 비롯하여 가입국 모두 제공정보가 형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외국기관의 협조요청 정보 등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MMoU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사실과 요청내용 등 요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외국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고 있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증권거래법은 별도의 비밀유지조항이 없고 다만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35조 등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누설금지 등 포괄적 비밀유지 조항만 가지고 있다. 현행 법 해석으로도 일반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입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49) 상계 MMoU §10(a)(ii) 및 Questionnaire 8.

50) 상계 MMoU §11(a)와 (b) 및 Questionnaire 9.

한편 Boca Declaration은 파생상품 감독기관간 국제협력체로서, 거래소 등의 상호간 정보교환 MOU를 보완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에 발족하였다. 현재 26개국 28개 감독당국이 서명하고 있고 거래소 등의 정보교환 MOU는 71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위상을 감안할 때⁵¹⁾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국경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Boca Declaration에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⁵²⁾ IOSCO MMoU와 Boca Declaration의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다.

< IOSCO MMoU와 Boca Declaration의 차이점 >

구 분	IOSCO MMoU	Boca Declaration
목 적	국경간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원칙적으로 선물시장(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리스크관리를 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시세조종의 경우를 포함
관할영역과 감독기관	증권시장 / 증권감독기관	선물시장 / 선물감독기관
거래소간 MOU와의 관계	거래소간 국제협력과 관계없이 감독기관간 독자적인 국제협력체	거래소간 정보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감독기관간의 보완적 협의체
가입요건의 엄격성	까다로운 가입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원만 가입 - 해당국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별다른 가입요건이 없으며 서명기관은 자국 법령 한도내에서 협조하면 충분
협력 범위	정보공유 및 조사대행	정보공유에 한정
제공정보의 사용범위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 가능	감독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
불이행시 제재	MMoU에서 제명	제재조항 없음

51)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계약 기준으로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압도적인 세계 1위이고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다.

52) 우리나라의 경우 구 증권거래소(KSE)는 '96년에, 구 선물거래소(KOFEX)는 2001.1월에 FIA(미국선물업협회)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동 MOU에 가입하였다.

VI. 외국자본의 거래소 지분 취득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나 증권예탁결제원 같은 자본시장의 인프라는 국가경제의 핵심 시설로서 외국자본에 의한 소유·경영권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은 다음과 같이 이들 기관의 독점적 지위와 외국자본의 지분소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가.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나.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에 대한 미합중국 금융 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유보로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미래유보로 이들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들이 추후 상장 등 기업 공개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보완과제

그런데 거래소의 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 인프라인 거래소의 상장이후 우리 국민에 의한

안정적인 소유·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국거래소와 상호지분교환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세계 주요거래소는 90년대 중반이후 진행되어온 조직구조의 탈상호소유화(Demutualization) 및 주식회사 전환과 기업공개 및 상장을 마무리하고 거래소간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24시간 거래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⁵³⁾ 이에 따라 멀지 않은 시기에 세계 거래소는 메이저 플레이어(NYSE-Euronext, Nasdaq, London Stock Exchange 등)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전략적 동맹그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 자본시장의 급속한 재편과정에서 주요 거래소와의 연계 및 제휴에서 소외되는 거래소는 지역 거래소(Local Exchange)로 전락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낙오될 전망이다.⁵⁴⁾

우리 거래소도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거래소와의 자유로운 전략적 제휴가 긴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인프라인 거래소의 소유 및 경영권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되,⁵⁵⁾ 그 범위 내에서는

53) 현재 세계 주요거래소중 우리나라, 일본(동경거래소의 경우 2009년 상장 예정) 및 중국(상하이거래소 등) 정도만 기업공개 및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4) 주요거래소간 대규모 합병과 더불어 거래소간 지분취득 내지 상호 지분교환 등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를 보면, 1999년에는 독일거래소와 스위스거래소가 50:50으로 세계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설립하였고, 2000년에는 홍콩거래소가 싱가포르 거래소의 IPO시 1%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2003년에는 토론토거래소가 미국의 전자거래소인 Archipelago의 지분을 4.85% 취득하였고, 2004년에는 비엔나거래소가 부다페스트거래소 지분 14.0%를 취득하였다. 2005년에는 Euronext가 유럽 전자채권시장인 MTS Group의 지분 51%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유럽의 OM 거래소는 에스토니아(50%, '01), 라트비아(75%, '01), 리투아니아(55%, '05) 거래소 등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격화되어, 동경증권거래소는 지난 6월 싱가포르거래소의 지분 4.99%를 인수하였으며, 싱가포르거래소는 지난 3월 \$42.7 mil. 규모의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 지분 5%를 인수한 바 있다. 한편, 금년 9월, Nasdaq과 두바이거래소(Borse Dubai)는 두바이가 OM 거래소를 인수한 이후 OM 거래소의 소유권을 Nasdaq에 이전하는 대신 Nasdaq 지분 19.99% 및 Nasdaq이 보유한 런던증권거래소 지분 28%(주당 인수가격: £14.14)를 받는 조건부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55)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재계는 상계 각주에서 언급한 두바이거래소의 Nasdaq 지분 19.99% 인수 합의 발표 이후 중동 지역 거래소에 의한 자국 제2의 증권시장

자유로운 제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⁶⁾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거래소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규제하는 법을 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거래소법’이라 한다)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이 있다. 거래소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외국의 증권·선물거래소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정부가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감위는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⁵⁷⁾

한편 외촉법은 제4조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제5조에

인 Nasdaq의 피인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두바이거래소는 현재 Nasdaq의 지분 약 17%를 보유한 미국 Horizon Asset Management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는데, 부시 미국대통령은 두바이거래소의 Nasdaq 지분인수는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에 의거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것임을 시사하였고 미 상원도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바이거래소와 Nasdaq은 미국 정부의 반발을 감안해 Nasdaq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엑슨-플로리오법을 집행하는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혔다. 엑슨-플로리오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희환, “미국의 기간산업보호와 엑슨-플로리오법”, 「법학연구」 제48권제1호(통권 제57호) 상,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7.8 참조.

56) 최희갑, 전제 논문, 87면도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7) 한편, 정부는 2007.10.12. 거래소의 IPO 및 상장에 즈음하여 거래소의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입법예고안은 거래소와 그 주주들이 출자하게 될 공익법인(가칭, “자본시장발전재단”)이 거래소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거래소의 안정 주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 유사사주조합은 5% 초과보유 금지대상에 포함하였다. <http://www.mof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초청협정부속서1(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는데,⁵⁸⁾ 동 규정은 제4조 및 별표 1에서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지정하고 제5조 및 별표 2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그 제한내용을 정하고 있다. ‘증권 및 선물거래소’는 법원·검찰·경찰·중앙은행 등 국가중요 기관과 함께 별표 1에 의한 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외축법 제2조제1항4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제2조제2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 일부를 소유하면서 임원선임, 납품·구매,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외축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우리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 상호지분교환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신상품을 공동개발하거나 기존의 상품을 교차상장하는 경우 외축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어 외국거래소와의 실질적인 제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축법과 거래소법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

5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2006.3. 23). <http://www.mocie.go.kr/법령정보/고시·공고> 참조.

지만 이 문제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관해서는 외축법이 적용되지만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므로 거래소의 설치 근거법인 거래소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단순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의 증권·선물거래소와의 제휴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축법의 규제대상이라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그 투자한도도 5%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특별법 우선 원칙 하에서는 외축법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즉 외축법의 기본 규제대상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직접투자이고, 거래소법은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다루는 것 아니냐며 상호지분교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직접투자이므로 외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거래소법이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거래소법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후 외축법의 산업자원부 고시에서 거래소를 금지업종으로부터 제외하여 양 법률간 상충되는 측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외국인의 소유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거래소법으로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차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다수의 외국자본이 포트폴리오 투자로 각자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후 암목적 합의로 임원선임 등의 경영 관련 사안에 대해 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실질적 지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한미FTA에서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외국인의 지분취득 제한을 인정받게 되어 다행스럽다. 향후 외국자본에 의한 실질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총보유한

도를 거래소법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한도는 단순히 50% 미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차단할 수 있는 30% 또는 2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⁵⁹⁾

VII. 맺음말

이상으로 그 어떤 FTA 보다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법적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추가 FTA 및 금융서비스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신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로 인해 미국 금융회사의 만만찮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인가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감독당국의 대응에도 어느정도 한계는 있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신금융서비스의 확대는 금융의 국제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국경간 거래에 관해서는 Mode 1의 “국경간 공급”과 Mode 2의 “해외 소비”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거래에서는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국경간 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식은 국경간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이용국 규제를 적용하고, 점차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고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분야부터 제공국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국외 이전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59) 참고로 개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통신업(49%), 민영화법인(30%), 신문업(30%), 항공업(49.99%), 방송업(지상파·보도전문0%, 위성방송33%, 종합유선49%)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감독당국간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FTA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적 감독공조체제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MMoU와 선물거래 관련 Boca Declaration의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거래소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외국자본의 총 취득한도를 설정할 것과, 그러면서도 외국 거래소와의 지분교환에 의한 원활한 전략적 제휴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지를 해제하고 관련 규제를 거래소법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인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 정부는 방어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이는 양국의 실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였다고 본다. 이제 이왕에 체결된 한미 FTA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산업 역량을 육성하고 강화하여 향후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주도하게 되는 날을 꿈꾸어 본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금융정보 국외이송, 감독기관간 국제협력, IOSCO MMoU, Boca Declaration, 거래소, 외국인투자촉진법

【참고문헌】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김상조,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 방안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4.
-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한,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 백윤철,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토지공법연구』 제1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6.
- 성희활, “미국의 기간산업보호와 엑스-플로리오법”, 『법학연구』 제48권제1호(통권 제57호) 上, 부산대 법학연구소, 2007.8.
- 송홍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 거래와 투자자보호”, 『금융리스크리뷰』, 제3권제2호, 2006 여름.
-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 금융브리프』, 제15권제10호, 2006.3.
- 심 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 이호진, “금융시장 개방 쟁점과 파급효과”, [한미FTA, 전문가에게 듣는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2006.8.22.
- 임규철,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36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1.
- 정경영, “한미 FTA가 자본시장 법제에 미치는 영향”, 『증권예탁』 제59호 2006-3분기, 증권예탁결제원, 2006.

-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제25권제2호. 상사법학회, 2006.
- 최승필, “경제행정의 수단으로서의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1.
- 최희갑, “한미 FTA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증권예탁』 제59호 2006-3분기, 증권예탁결제원, 2006.
- Aaditya Mattoo & Sacha Wunsch, “Preempting Protectionism in Services: The GATS and Outsourcing”, January 2004.
- Emad Tinawi & Judson O. Berkey, “E-SERVICES AND THE WTO: THE ADEQUACY OF THE GATS CLASSIFICATION FRAMEWORK”, OECD Forum on E-Commerce, October 1999.
- J. William Hicks, “Effective Securities Law Enforcement: Illegal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Fraudulent Disclosures involving Securities Of Foreign Issuers”, 『증권선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6.6.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ree Trade with Korea Summary of the KORUS FTA, Trade Facts, April 2007.

FTA and Some Legal Tasks in the Area of Financial Industries

Seong, Hye - Hwal *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legal tasks in the area of financial industries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part in FTAs with a primary focus on the Korea-United States FTA.

First is the issue of the “new financial services”. The newly adopted negative system for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or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may invite substantial challenges from the US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may face with some difficulties regulating the challenges since there seem to be limits in the authorizing power and process for the new financial services to be introduced by foreign financial companies. Despite these problems, however, the “new financial services” are taken for grante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financial industries, so we need to improve our capability with positive thinking.

In the issue of the “cross-border trade”, the paper points that first, the Internet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ode 1 (cross-border supply) and the Mode 2 (consumption abroad). Next,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cross-border trade”, it suggests that in the early stage the regulation of a consuming country be applied and gradually to

* Korea Exchange, Head of Legal Affairs, S.J.D & Attorney at Law in New York. The views in this article are my personal views and not those of the Korea Exchange.

convert to the application of the supplying country's regulation. For the issue of the oversea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the article recommends the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transferred and the revision of the current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financial regulators around the world is one of the keystones strongly holding the integrity of the world financial markets. Especially since the IOSCO MMoU and the Boca Declaration are regarded as the basic frameworks for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regulation,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are advised to jo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chemes.

Finally, the Korea Exchange needs, on the one hand, to be ensured stable management by limiting the total ownership by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to be allowed to freely exchange share ownership with other exchanges for strategic alliances.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FTA, KORUS FTA, New financial services, Cross-border trade, Oversea transfer of financial information, IOSCO MMoU, Boca Declaration, Korea Exchange